새로운 도약,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598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598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사.의결(2026. 9.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202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2) 제안배경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을 출연하고자 함.

3) 출연금액: 12,677천원(구비 100%)

○ 출연근거:「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산정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126,774,873천원(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10,000=12,677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옥주)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 반영에 앞서 사전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자치단체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단체가 운영 경비를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4598

제출연월일: 2026 8. 27.
제 출 자: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202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제안배경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을 출연하고자 함.

다. 출연금액: 12,677천원(구비 100%)

○ 출연근거:「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산정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126,774,873천원(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10,000=12,677천원]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나. 관계법령:「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규모	12,677천원
주관부서	세 정 과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1. 출연배경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2. 출연근거

가.「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나.「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3. 출연금액: 12,677천원

- 산정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126,774,873천원(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10,000=12,677천원]

4. 출연 대상기관 일반현황

가.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신승근)

나. 설 립 일: 2011. 2. 28.

다.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양재동)

라. 주요사업: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5.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출연금	12,153	12,775	14,513	14,299	12,295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단위: 천원)

부 서	안 건 명	출연금액
세정과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67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나. 관련조문: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6,774,873천원
- 출연금 산출 비율: 1만분의 1.0

나. 비용추계 결과

- 126,774,873천원(20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10,000 = 12,677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출연금)로 편성

3. 작성자: 기획재정국 세정과장 구 영 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세 출		12,677	12,718	13,008	13,306	13,613	65,322
출 연 금		12,677	12,718	13,008	13,306	13,613	65,322
재원 조달		12,677	12,718	13,008	13,306	13,613	65,322
자체수입	소 계	12,677	12,718	13,008	13,306	13,613	65,322
	지방세수입	12,677	12,718	13,008	13,306	13,613	65,322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지방세 세입 전망 반영(연평균 신장율 2.3%)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 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 조사 ·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 · 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